

2004 사형폐지자료집

인사말 유인태의원
사형폐지법안 입법취지 박경용 변호사
"사형수의 인권, 교도원의 인권, 성지자의 인권" 이영우 전부
사형폐지 대체 철학_황필규 목사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2선택 의장서 고은재 위원

[자료1] 사형관련 법조망/한국의 사형폐지운동역사

[자료2] 사형의 존폐론에 관한 고찰

[자료3] 한국의 사형제도 현황

[자료4] 사형제도폐지 관련 기사보음 2001년 10월~2004년 7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2004 사형폐지자료집

nodeathpenalty.or.kr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단체협력사업에 의한 것입니다.
본 자료집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전주고인권위원회



전주고인권위원회

2004년 사형폐지자료집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nodeathpenalty.or.kr

천주교 인권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말부터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폐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고, 16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155명의 서명으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채 국회회기가 만료되어 역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사형제도가 있고, 사형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흉악한 범죄가 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에서 폐지하기 전보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결과도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서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형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보로서의 형벌보다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성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물질주의는 사회를 황폐화하고 극단적으로 윤리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사형을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철학의식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폐지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17대 국회기내에 실질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한 토론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4년 10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층
- 주최 :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 : 김형태 변호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사형폐지법안 설명과 입법화 경과」

유인태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 주제발표 1 : 사형제도폐지법안 입법취지 설명

박경용 변호사

□ 지정토론 1 :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이영우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2 : 사형제도의 대체전략에 대한 검토

황필규 목사, KNCC인권위원회 사무국장

3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2선택 의정서 가입검토

고은태 엠네스티 한국지부 집행위원

7_인사말 / 유인태 의원

10_현행 법률 중 사형관련 법조항

12_한국의 사형폐지운동 역사

13_사형폐지법안 입법취지에 관해 / 박경용 변호사

17_사형제도와 인권 / 이영우 신부

31_사형폐지 대체 전략에 대해 / 황필규 목사

36_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2선택
의정서 가입검토 / 고은태 위원

42_참고자료 1 · 사형의 존폐론에 관한 고찰 /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48_참고자료 2 · 한국의 사형제도 현황 /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56_참고자료 3 · 사형제도폐지 관련 기사모음(2001년 10월~2004년 7월)

사형제도, 17대 국회에서는 꼭 폐기해야

사형폐지운동사에 천주교는 괄목할 만한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2000년 초, 한국 천주교는 대희년(大禧年)인 2000년을 맞아 이 해를 '사형폐지의 해'로 정하고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생명과 인권을 논하는 거대담론의 장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953년 제정된 우리형법은 폭넓게 사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인 형법은 물론 특별형법을 포함하여 도합 33개의 법률에서 약 140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의 선고와 집행도 빈번히 그리고 대량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1997년까지 50년 동안 총 902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고, 이는 연 평균 19명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일반법원의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통계로서 군사법원의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통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토록 광범위한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야 말로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999년 말, 제15대 국회에서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이 국회의원 299명 중 91명의 찬성을 받아 국회에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형법 및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조항의 효력상실을 규정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며, 형법 및 특별법상의 무기형을 최고형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법감정은 무기형만으로 사형이 담당해 온 범죄 억지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법사위원회에서 단 한차례의 논의도 되지 못한 채 2000년 5월 30일 제15대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형폐지운동가들이 국회에서 특별법제정의 형식으로 일거에 사형을 폐지하려는 첫 시도였습니다.

입법에는 실패하였지만 그 성과는 컸습니다. 사형을 반대·폐지하자는 국민 여론이 1994년의 20%에서 1999년에 43%로 증가했고, 나아가 그 동안 전개되어 왔던 사형폐지운동에 대한 입법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 이제부터는 법조계와 인권단체들과 만날 기회를 자주 만들어 사회적 공론화도 시도하고, 국회 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모으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사형제가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폐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모인 분들을 포함하여 사형폐지운동을 해 오신 모든 분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저는 사형을 선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극악무도한 살인자 백명을 사형함으로써 얻는 감정적 해소보다 저같이 억울한 사형수 한 사람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하여 사형이 폐지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대 국회

정대철의원의 주도로 천주교 등 종교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2001년 6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성안되었고, 2001년 10월 30일, 전체 국회의원 273명의 과반수가 넘는 15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다룰 소위원회까지 구성되었지만 한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16대 회기종료시점에 사형제 폐지 찬성의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의장직권으로 상정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기종료와 함께 두 번째 폐기되었습니다.

유 인 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7대 국회

국회는 사형제 폐지 입법을 위해 지난 15대와 16대에 조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실을 맺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이러한 논의와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구성으로 볼 때에도 가장 성공여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7대 첫 국정감사도 끝났습니다. 개원이후 빠듯한 국회일정으로 사형제 폐지 법안 추진이 조금 지체된 부분에 대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분들이 수고하시어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특별법안이 만들어졌습니

현행 법률 중 사형관련 법조항

- 1) 형법
- 2) 형사소송법
- 3) 행형법
- 4) 군형법
- 5) 군행형법
- 6) 군사법원법
-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8) 국가보안법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0)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11) 마약류 불법 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14) 대통령 경호실법
- 15) 상훈법
- 16) 한국조폐공사법
- 17) 원자력법
- 18) 전투경찰대 설치법
- 19) 경찰관 직무집행법
- 2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21) 호적법
- 22) 사회보호법
- 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4) 법원조직법
- 25) 범죄인인도법
- 26) 소년법
- 27)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2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기운항안전법을 2002년 11월 30일 개정)
- 29) 항공법
- 30) 문화재보호법
- 3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2) 형사보상법
- 3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34) 대한민국 헌법
- 35)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 36) 부정정축재처리법
- 37) 부정축재환수를 위한 회사설립 임시 특례법
- 38)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 39) 원자력법
- 40) 원자력시설등의 방통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41) 위수령
- 42) 지뢰 등 측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43)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 44)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 부조리법

한국의 사형폐지운동 역사

한국에서 사형제도 폐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국제 앤네스티 한국위원회가 1972년 창설되면서부터이다. 한국 앤네스티는 1974년 「사형제도의 재고를 바라는 건의문」을 대통령 등 주요 국가기관장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1978년에는 사형폐지 캠페인을 벌이고 80년 1월에는 사형폐지운동 그룹을 결성하는 등 시대를 뛰어넘는 활약상을 보여 왔다. 사형폐지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흐름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5월 30일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창립되면서 사형제도 폐지운동은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당시 사폐협의 결성 모체는 천주교를 비롯한 개신교, 불교 등 종교단체의 종교인과 자원봉사자등으로 구성된 서울구치소교화협의회였다. 가톨릭교회 차원에서는 당시 서울대교구 교정사목을 담당하고 있던 추영호 신부가 사폐협 결성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과 함세웅 신부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양적으로 확산된 사형제도폐지운동의 틀에서 활동가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 개정운동과 아울러 사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을 위한 강연회, 성명서 발표, 법률구조 활동, 인권선진국 단체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운동을 질적으로 고양시켜 왔다. 이 가운데 미국 흉악범죄 희생자 가족 및 사형수 가족 대책위원회인 「솔라스(SOLACE)」와 일본 JCCD(범죄와 비행에 관한 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등 다양한 국제 활동은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형폐지운동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2000년 대회년을 앞두고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펼친 것을 기점으로 사형폐지운동은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가톨릭교회는 사형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대사회적으로 본격화했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뒤의 대안을 종신형제로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15대 국회에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었지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고, 16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155명의 서명으로 사형폐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채 국회회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

사형폐지법안 입법취지에 관해

박 경 용 변호사

1. 사형폐지 특별법안

사형폐지 특별법안은 제1조에 본 법안의 목적을 “이 법은 국가의 형벌 중에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범죄자의 인권보호 및 교화개선을 지향하는 국가 형벌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해 “우리 헌법이 천명·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것임을 목적에 명시한 것이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헌법과의 관계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주체성’을 의미하며, ‘인격주체성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가치’라고 합니다.¹⁾

또한 인격의 본질은 자율성에 있으며,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단순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율성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형벌로서의 사형은 인간을 국가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제도가 사형제도인 것입니다. 자유형(무기형 포함)도 인간을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지만 이는 자신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를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사형과 같이 인간을 일방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²⁾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 가치이며 이는 헌법에 규정되기 이전에 이미 선형적으로 인간의 천부의 인권인 것이며 단지 헌법 제10조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받는 절대적 가치인 것이므로, 범죄자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부인되거나 경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내용을 부가해 표현한 것이면서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게 부여된 의무는 “개인”的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범죄자라 하여 국가의 이러한 인권의 확인과 보장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검찰이 법원에 구형하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법무부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며 이는 모두 국가의 이름으로 – 동시에 국민의 이름으로 –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제도적 살인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살인범의 공범인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사형제도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촉구해야 하며,³⁾ 결과적으로 “국가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생명권

우리 헌법은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2조 제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까지도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근거하여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견해는 없습니다.

생명의 개념은 생리학적 의미로 파악하여야 하며 생명에 대한 사회적, 법적 평가(생존할 가치가 있는 생명이다 · 아니다 /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다 · 없다.)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생명권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권에서 그 “본질적 내용”은 생리적인 의미의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생명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인 기본권이라고 평가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승형 재판관도 “생명권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이 생명의 유지이므로 생명의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 국가의 형벌권과 관계

형벌의 목적을 개선과 교육에 있다고 볼 때에는 사형은 전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원시적이고 무의미한 형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승형 재판관은 “개선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범죄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1) 헌법학원론, 권영성 저, 387면 참조

2) 인간의 존엄과 사형폐지론, 심재우, 사폐협 2000세미나 결과보고서 14면 참조

3)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우리의 임무,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 제2호, 161면 참조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고, 가사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한다는 문제는 더욱 어려운 문제로 결국 인간의 판단력으로서는 불가능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모든 범죄인에 대한 개선 가능성 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범죄의 책임이 범죄인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하여 있는 사회에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 범죄인에 대한 개선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사형제도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4. 결 론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형폐지운동은 생명존중 운동입니다. 살인범(사형수)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고,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이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 식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교화와 개선이라는 형벌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

사형제도와 인권

이영우 신부,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59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권이 있을까. 그 사형수들이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법률적으로 여러 면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사형제도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이야기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더 큰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당장 사람의 목숨이 죽어 가는데 책상에 앉아서 옳으니 그르니 탁상공론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기에 앞서 사형수들을 떠올리며 사형집행 현장을 머리 속에 그려 봅시다. 어느 교도관이 사형집행 현장에서 체험했던 글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 장면을 그리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형장이 '하늘가는 밝은 길'로>

사형수들은 자신이 지내던 감방에서 불리워 나와 긴 지하복도를 걸어서 자신이 목매달려 죽을 지하실 밑을 통과한다. 사형장 밑을 통과하면 바로 문이 있다. 사형수들은 계단을 올라 문을 밀고 집행하는 곳에 앉게 된다. 그게 사형장이다. 나도 그 때 사형장은 처음 와 본 것이다. 처음 들어오니 얼마나 삭막하던지… 신우회원들은 일단 이 곳에 들어와서 굽은 밧줄 밑에 둘러서 통성기도부터 했다. 밧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을 옮아 죽였는지 기름이 묻은 듯 반질반질 했다. 그것을 보니 비위가 훨 뒤틀렸다. 매스꺼움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생기질 않았다. 오늘 이곳에서 목매달려 죽어야 하는 믿음의 형제들, 불쌍한 사형수들이라는 인간적인 애처로움과 서러움이 계속 베어 나왔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사형장에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임을 되새겼다.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이 있고 없음이 드러나는 법인데 그 사형장에서 내 자신이 진실된 깊은 믿음이 없음을 통감했던 것이다.

어쨌든 통성기도를 하고 한 교도관 집사가 마무리 기도를 했다. 기가 막힌 기도였다.

“하느님, 우리도 무섭습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서 이 땅을 떠나야 할 사형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느님, 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곳이 죽음을 맞는 공포의 자리가 아니라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면 하느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사형수들을 데려오는 일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 사형수들이 감방에서 사형장 까지 오는 길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길이다. 이 길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감방 안에 앉았다가 ‘00번 나와!’라는 소리를 들으면 발버둥을 친다. 쇠창살을 불들고는 ‘나는 안 가! 못 가! 살고 싶어, 죽기 싫어!’하

며 발버둥을 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수갑을 채워서 들고서라도 목을 매달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끌려오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찾는데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목 놓아 올며, 부르며 그 길을 온다. 창틀 사이에 조그만 들풀이 피어 있어도 그곳에 코를 대고 폐부가 찢어지도록 풀냄새를 맡는 이도 있다. 마지막으로 조그만 쪽문을 들어서기 전에는 창문 틈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고 땅 한 번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수갑을 차고 끌려오면서도 생의 마지막 발걸음들이 두렵고 아쉬워 그냥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보폭이 5cm도 될까 말까 하게 발걸음을 편다. 그렇게 오다가 일부러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담당님, 저 신발 벗겨졌습니다.’라면 다시 신발을 주으려 또 돌아온다. 그만큼 더 살겠다고. 또다시 신발 있는 데로 돌아와서 신발을 신고 돌아서고 한 발자국이라도 벌며 1분, 1초라도 좀 더 살아보고 싶었던 생명에 대한 처절한 애착이다. 죽음의 길에서 보여주는 사형수들의 모습이다.

사형집행현장에는 사형수와 검찰과 교도관, 각 종파의 성직자들이 참여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제도적 살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형집행에 있어서 인권의 문제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형수들의 인권문제이고, 둘째는 교도관의 인권, 셋째는 성직자들의 인권입니다.

1. 사형수의 인권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사형수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사형수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신앙을 통해 극복해내려고 노력하지만 죽음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자주 사형이 집행되어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른다든지, 연말이라든지, 유영철 사건처럼 흉악한 범죄가 발생되면 사형집행이 곧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죽음을 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유영철 사건 때문에 사형집행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어느 때 보다 고달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형수로서 사형집행을 가까이 지켜본 형제는 다음과 같이 그 당시를 말합니다.

형 집행하는 날을 세 번 보냈습니다. 사형수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형 집행이 있는 날은 음산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오늘이 그날’임을 알게 됩니다.

그 날은 어느 날보다 몸 씻음은 깨끗하고 옷매무새는 단정합니다. 이승을 떠나는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도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방에서 기다리며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번호가 불려지면 지체 없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출입구 쪽 가까이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알몸으로 태어나 많은 것을 누리다 신세만 지고 떠나는 자로서 세상에 대한 감사의 기도이고, 형 집행으로 가는 사형수들이 평화롭게 죽음을 맞기를 바라는 기도이며, 피해자의 영혼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될 속죄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형 집행이 있던 때입니다. 이제 겨우 스물 셋의 나이로 형장으로 가기 위해 내 방을 지나며 “형님, 먼저 갑니다”라고 인사하던 젊은 사형수에게 “그래, 나도 곧 갈거야”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곧 간다고 한 것은 같은 사형수라는 동병상련의 감정도 작용했겠지만 세상을 두루 경험하지 못한 스물 셋의 젊은 나이로 형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친구가 안스러워 순간일지도 도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가는 거니까 외롭다거나 어떤 조금의 미련도 없이 당당하게 죽음을 맞자는 위로하고픈 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와 젊은 인사를 나누며 참으로 맑은 그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있을 법한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해맑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 그의 맑은 눈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형장으로 가기 위해 등을 보이며 가는 그 친구를 보면 그를

대신해서 내가 형장에 갔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 친구의 맑은 눈이 세상에 좀 더 머물러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새로이 인식하고 세상과 무엇이든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귀하고 저마다 천부적인 생명을 지닌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젊은 사형수의 죽음을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형 집행이 끝난 후 며칠동안 나는 꿩끔 않았습니다. 슬픔이 쉬 가지지 않아서였습니다. 사형수인 내가 이럴 진데 그 친구의 가족들은 어떨까, 내가 겪는 슬픔으로 가족들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내 마음에 전해지는 듯하여 참으로 견디기 힘든 슬프고도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사형수들이 가지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사형수들도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는 한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집행방법에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은 교수형, 가스형, 전기의자형, 주사형, 총살형 등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교수형으로 집행합니다. 그러나 교수형 집행 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사형수를 두 번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기경의 회고록〉

그때 만난 재소자들 가운데 최월갑이란 사람은 뇌리에 각인된 것 마냥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는 살인강도죄를 짓고 사형선고를 받은 젊은 사형수였다. 개신교 신자였던 그가 천주교로 개종하고 싶다고 해서 미사도 드려주고, 수녀님께 교리를 잘 가르쳐 주라고 특별히 당부까지 해놓고 만났다. 그는 이미 신앙 안에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용서받은 상태였다. 선하다 선한 눈빛만으로도 그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세례를 받기 직전에 사형대에 서야 했다. 사형집행 소식을 듣고 교도소로 달려가 그에게 조건부 세례를 주었다. 죽음을 앞둔 그는 놀라우리만치 평화로웠다. 오히려 다시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일상으로 돌아갈 내가

울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선물로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살려내신 복음(요한 11, 38-44)을 읽어 주었다. 그는 천주교묘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형대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쿵”하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그 소리는 심장에 꽂히는 비수(匕首)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주위가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런데 잠시 후 간수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소장에게 뛰어왔다.

“소장님, 월갑이, 월갑이가….”

“왜 그래. 무슨 일인가?”

“월갑이가 저 밑에서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무슨 뚱딴지같은 얘기야. 죽은 사람이 웃나니?”

현장에 가보았더니 그가 목에 뱋줄을 걸고 정말 편안히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무로 된 낡은 교수기(絞首機)가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아래로 함께 떨어진 것이었다.

소장은 즉시 “사형집행 계속!” 명령을 내렸다. 젊은 사람을 두 번 죽여야 하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난 애처로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간수들이 사형대를 고치는 것을 태연스레 보고 있던 월갑이가 말문을 열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지금 죽는 것이 제게는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제가 반시간쯤 후면 천당에 가 있겠네요.”라며 날 위로하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두 번째 죽음도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다음날 시신을 인도받아 계산동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참례자들에게 내가 목격한 그의 죽음을 전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한 강론을 했다. 그리고 유언대로 시신을 교회묘지에 안장했다.

교수형은 신체에 손상이 없고 피도 그다지 나오니까 잔학하지 않고 교도관의 저항감도 그다지 없다는 것이 집행하는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후루하타는 “특히 순간적으로 사망하는 것은 주사사와 가스살과 참수이며, 그에 이어서 전기 살, 총살, 교살이다. 다만, 교살할 때에는 집행 후 즉시 의식을 잃는다”고 감정하

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교수형이 가장 길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사형수의 고통을 가급적 없애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집행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견상의 손상 유무나 잔학성보다도 본인의 고통을 가급적 없앤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수형이 사망하기까지 가장 긴 시간을 요한다면 교수형이야말로 가장 잔학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도관 인권

사형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의 인권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관념적인 논쟁만이 선행될 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정신적 고뇌까지는 생각이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사형을 주장하고, 법관은 흉악범을 국민감정 혹은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국민이든 법관이든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교도관에게 명령하여 집행합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는 무서운 업무만 교도관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가 앤린은 “사형은 지지하고 있으면서 왜 집행인은 미워하는가?” “사형이 있으면 집행인이 필요하며, 누군가 이 업무를 ‘의무’로 행해야 하는데, 왜 직접 집행을 하는 사람만 미워하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임신 중의 집행, 저항하는 수형자의 목에 로프를 감는 불쾌감, 회개한 사형수를 죽여야 하는 모순, 교도관과 사형수가 인간적으로 교류한 이후의 처형, 특별히 원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인간을 냉혹하게 죽여야 하는 현실. 이 모두가 교도관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법의학의 창시자인 아사다는 직접 사형집행을 견학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목에 로프를 걸고 지하에 콩 떨어지므로 몸이 비꼬듯이 회전하고, 끝까지 회전하면 이번에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때 대소변을 싸게 되는데 그것이 원심작용에 의해 사방으로 흔다. 또한 간수가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체

를 꼭 붙잡고 회전을 막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형수가 의식은 상실해도 몸이 경련하여 심하게 움직이고 심장이 수분간 고통을 칠 때에는, 교도관이 줄에 매달린 사형수의 다리를 힘껏 잡아당겨서 집행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밧줄 길이를 너무 길게 잡아 지하에 떨어진 사형수가 매달리지 않고 바닥에 부딪쳐 부랴부랴 끌어올려 집행한 경우도 있으며, 밧줄이 벗겨져 지하실 바닥에 낙하하자 직원들이 지하에 뛰어 내려가 사형수의 목에 밧줄을 걸고는 밧줄을 잡아 올려 집행한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형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죄악감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고뇌를 안겨줍니다.

“저는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둘 모두 저를 아주 평범한 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사람이 잔인한 저의 직업을 알 수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람도 제가 처형을 마치고 죽음의 냄새를 묻힌 채 귀가하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합니다.”

“목에 로프를 감을 때, 어떤 사형수는 저에게 등골이 서늘한 한 맷힌 말을 내뱉었습니다. ‘죽이려면 내 살가죽을 벗기고 죽여라. 귀신으로 환생해서 널 죽여 버리겠다.’”

“글자도 거의 읽지 못하는 수형자가 성가를 부르면서 교수대에 올라갔을 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마음으로 돌아간 인간의 목숨을 무참하게 끊어야 하는가! 그런 사형수들도 목을 조이는 로프를 조금이라도 잘못 매면 몸이 심하게 경련합니다. 의식이 남아있는 듯 괴로워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집행에 입회했을 때 사형수가 지하에 떨어지면서 ‘꺅’하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명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은 제 손으로 처형한 27명의 사형수의 위폐를 불단에 올려놓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담배연기를 깊이 마시고 차를 후루룩 마시던 처형 직전의 사형수, 이 안타깝고 무저항한 인간을 죽이는 자신의 업무가 저주스럽습니다.”

“집사람이 크리스천인데, 결혼할 때 사형집행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서 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순번이 돌아와 직접 사형집행을 했는데,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사실에 괴롭습니다.”

사형집행이 끝났을 때, 참여한 교도관들은 눈에핏발이 서는 등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둘러 구치소 근처의 술집으로 몰려가 깡소주를 밤새도록 퍼마십니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또 사회정의를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죽어간 사형수들은 오랫동안 부대끼면서 정이 들었던 얼굴들입니다. 집행 후 어느 교도관은 집행 뒤의 소감을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한 거죠”라고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열렬한 사형반대론자들은 사형집행인입니다.

교도관은 죄를 저지른 자를 바로잡아(矯) 올바르게(正) 인도하는 직원이며, 교도소는 바로잡아(矯) 인도하는(導)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장소(교도소)에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직원(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끔(사형) 강요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정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교도관이 사형집행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입니다. 악마의 길에 빠진 자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같은 손으로 이번에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여러 전문직업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경찰관, 검사, 법관, 의사, 교도관은 물론,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공판에서 증언을 하는 감정인이나 혹은 평결을 해야 하는 배심원에게 사형집행은 비참한 경험이 됩니다.

특히 사형절차에 가담하는 것은 개인적인 고뇌의 씨앗이 되며, 직업상의 윤리와 직무수행 사이에서 갈등을 낳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사형절차에 관여한 교도관에게는 사형은 마음의 평온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며 그 결과 사형반대

자가 되기도 합니다.

페스탈로찌는 인간은 비참한 것을 목격하면 마음이 황폐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루소도 『에밀』에서 “인간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접하는 의사나 성직자는 온화한 마음을 잃고 무감각해지며 냉담해진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 교도관도 의사나 성직자 이상으로 냉혹해집니다. 사형집행은 이러한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교도관 중에는 집행횟수가 거듭되면서 죄악감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도관이 진정으로 사형집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즉, “나는 그저 법에 의한 집행을 도왔을 뿐이다.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는 한 진정한 사형집행인은 국민이며, 내 자신의 양심의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지 못한다면 평상심(平常心)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피는 『사형수』라는 소설에서 사형집행의 합리화를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찰근무를 하는 경찰관은 말한다.

“나는 그저 그 남자를 체포했을 뿐이다”

지방검사는 말한다.

“나는 그저 증거를 제출했을 뿐이다”

배심원들은 말한다.

“우리는 그저 증거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법관은 말한다.

“나는 그저 배심원들의 결론에 법을 적용하여 선고했을 뿐이다”

그리고 교도소로 호송해 온 경관은 말한다.

“나는 그저 법관이 데리고 가라고 명령한 장소로 연행했을 뿐이다”

간수는 말한다.

“나는 그저 탈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했을 뿐이다”

상급법원의 법관은 말한다.

“나는 그저 소송을 검토해서 오심인지 아닌지를 심리했을 뿐이다”
사형집행인은 말한다.

“나는 그저 교도소장이 신호할 때 전원을 넣었을 뿐이다”
교도소장은 말한다.

“나는 그저 주지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하기에 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

그리고 지사는 말한다.

“나는 그저 우리 주민이 제정한 법률을 충실히 지켰을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형집행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이에 대해 까뮈는 “이미 우리는 ‘죄 없는 공범자’가 아니며, 스스로 손을 대지 않더라도 사형집행인임에 변함이 없다고 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사형집행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이 칼바트는 “만약에 스스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면, 사형존치론자는 즉시 그 생각을 바꿀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만큼 모두에게 사형집행은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사형집행을 강요당하고 있는 교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뇌를 이해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교도관들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형은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성직자들의 인권

어느 사형수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신부님! 솔직히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월요일 어머님들과 다른 자매님들을 만나고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살고 있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기를 “그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이분들의 선한 모습을 나에게 심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거칠고 생각은 악하고 행동은 불손하니 처음 얼마동안은 교회 시간만 되면 거북스럽고 양심이 찔끔찔끔

하였습니다. 성서를 읽어도 도무지 이해도 안됐구요. 그러나 저는 노력했습니다. 그분들의 언행과 성서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채워가다 보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천국은 사후의 것보다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 속의 천국이 더 감미롭다구요.

신부님! 저같이 뒷골목이나 누비고 다니며 매일 향락에 빠져 흥청망청 살던 놈이 하느님을 알고 뜻밖에도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느님을 알게 된 것이 제 스스로의 노력의 결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백정만도 못한 무식쟁이에 불과했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은인들로 하여금 저를 시나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삼 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변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형수들은 형이 확정되면서 거의 종교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과 종교위원들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변화됩니다.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조성애 수녀는, 형이 확정되고 집행될 때까지 “5, 6년간 사형수들의 수형생활과 집행 순간을 지켜보면 누구라도 사형제도의 비정함에 진저리를 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초기에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처음 1년간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수갑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잠도 수갑을 채운 상태로 재웁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구치소를 드나드는 종교인들을 통해 종교에 귀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여전히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해 때때로 자살충동에 빠집니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면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며 재소자들을 전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변화되어가는 사형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이 죽음의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많은 갈등과 아픔을 안겨줍니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면서도 그동안 형제들과의 정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기 위해

사형집행에 참여해야 하는 모순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하면서 죽어가는 형제를 볼 때는 자신의 무력감과 더불어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는 지금도 안성농협 카빈총 강도살인사건 범인으로 85년 10월 사형이 집행된 최은수(당시 30세)를 잊지 못한다. 형이 확정된 뒤에도 재심 청구를 되풀이 하며 ‘무죄’를 주장, 서울변협이 나서 구명운동을 벌이던 중 집행되자 “오편한 판·검사와 위증을 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후 처형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사형수들을 대할 때만 해도 사형이 필요악이거나 막연히 생각했던 文목사는 오편에 의한 억울한 죽음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진정한 교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특히 87년 4대독자 사형수(강도살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를 외치며 처형되자 노모가 이듬해 구치소 뒷산에서 음독자살하는 등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보고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신부님!

마지막 코스에서 만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하셨지요?

솔직히 저도 스산한 형장에서 신부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음산한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한 달 뒤 미사를 약속하고 헤어지는 발걸음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라니요!

온갖 정성과 사랑을 통해 변화된 형제들을 형장에서 만난다는 것은 사형수나 성직자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정교화를 담당하고 신앙으로 인도했던 종교인이지만 마지막 코스인 형장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면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축복해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 죽음을 목격하고 체험하지만 며칠 전 까지 밝게 웃고 함께 미사를 봉헌하

고 기도했던 형제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그것도 인위적으로 죽이는 현장을 보고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여러 명이 집행되는 과정을 다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의 고통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몇몇 사형수들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형집행에 입회했던 신부님들 중에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심신이 황폐해지고 급기야 입원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신부님은 보름정도 제대로 식사도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 형장에서 죽어간 형제들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맺는 말

사형판결을 내리는 법관은, 자신의 판결로 인해 한 생명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과 죄악감에 빠져 고뇌해야 하는 교도관이 있다는 것과 새롭게 변화된 한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명령을 내리는 법무장관도 그로 인해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과 직접 집행을 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고뇌를 인식해야 하고, 종교인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며, 흉악범도 자신이 저지른 죄 값을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또한 그로 인해 잔학한 형벌을 직접 집행하도록 명령받는 교도관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이며, 그것이 단지 직업 혹은 임무라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교적 신념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마지막 가는 사형수들을 위해, 그 현장에 참석하여 죽어가는 과정을 다 지켜봐야 하는 종교인들의 고뇌와 고통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며 그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사형폐지 대체 전략에 대해

- 사형제를 종신형제로! -

황필규 목사, KNCC 인권위원회 국장

2001년 16대 국회에서 155명의 의원들이 사형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장밋빛 꿈을 꿨보았지만, 법사위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논의 한번 안 되고, 국회 본회의(의장 역시 서명을 했지만)에 상정도 못되어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났다. 이제 참여정부 그리고 여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 분명히 16대와는 달라 보이지만, 그래도 자만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여전히 의원들이 벌벌 떠는 '여론의 변화'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사형제도의 대체 전략]에 대해 말해 보라는 요청을 받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내 보고자 한다.

1. '여론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형폐지에 대한 논리의 확산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의식의 전환' 작업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회, 심포지엄, 특히 사형제도의 역사와 철학, 논리에 대한 교육(강의, 설교 등)이 필요하다.

- 인권, 생명권

- 1) 고대사회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同害報復의 탈리오 법칙)
- 2) 희랍철학자 : 피타고라스 - 정당한 보복(형벌제도), 플라톤 - 신의 명령
- 3) 근대 계몽주의 : 인간의 존엄, 자유, 천부인권사상 강조
- 4) 교회 역사 :
 - (1) 터툴리안, 오리게네스 - 사형폐지 주장
(국가법은 하나님의 법 아니며, 오류 가능성 있다. 살생금지-예수 명령)
 - (2)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 사형제도 인정
(사형판결 국가에 위임, 공동선으로서)
 - (3) 술라이마허, 칼 바르트 - 사형 반대
(복음의 기준에 따라)
- 5) 유럽의 역사 속에서 :
 - (1) 1516년,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살인하지 말라 - 십계명'
 - (2) 1764년,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 - 계몽주의(사회계약설) 영향. "국가도 한 국민으로부터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사형제도는 '정의 가면'이다."
 - (3) 1829년, 빅토르 위고 [사형수 최후의 날] - 사형폐지론 주장
 - (4) 1912년, 모리츠 리프만 제 31회 독일법조회의 강연 - 형법학상 교육형론

의 입장에서 사형폐지 주장. "사형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위협이 안 되고, 오판경우 구제가 불가능하고, 교정·교육할 수 없기에 폐지해야 한다."

2. 기독교내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작업을 해야 한다.

- 1) 구약성서 - 모세의 율법, 계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행된 제도(피의 보복 - 창 4:10, 9:6, 탈리오 법칙 -출 21:33, 속죄의 의미-신 19:13, 례 21:9, 범죄에 대학 경각심 -신 13:12, 19:20에 적용)
- ** 이런 말씀은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시켜 볼 때 오늘의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Karl Barth도 성서와 복음을 구별하고, 사형제도를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 2) 신약성서 - 롬 13:4 "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칼로 진노하여 보응한다." (로마제국 시대, 사형집행은 지방 총독에게 위임된 상황)
 - * 예수의 주요 관심은 복음 선포였기에 국가와 법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마 22:21)
 - * 예수는 새 계명을 선포, 원수까지 사랑하라.(마 5:38-39)
- 3) 사도 바울 -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롬 12:17)

3. 사형폐지론을 중심으로 한 대체 전략

- 1)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가치의 존중, 생명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제도 : 소위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 생명 경시에 대한 악순환
- 2) 범죄 예방이나 억제 효과 없다.(합리적 공론 형성)
 - : 유럽국가(EU) 회원자격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 - 필리프 모리스 [증오에서 삶으로, 2002년 궁리] 1977년 20세 형의 탈옥 협조로 구속/ 도망중 경찰 살해 1980년 사형선고/ 23년간 감옥생활/ 역사학 박사학위 취득/ 미테랑 대통령에 의해 사면(EU)
 - EU 국가의 범죄관련 통계자료 홍보
- 3) 오판의 가능성 - 김도행 사건,
 - : 비정치범 중에도 꽤 있을 것 같은 데 확인이 안 되고 있을 뿐
 - 1945년 이후 1,634명(998명?) 사형집행, 현재 사형수 58명 정도.
- 4) 인도적 이유 - '국가'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심판권을 가질 수 없다.
 - : '국가' 개념의 변화, 국가이익, 국가안보에서 민중안보(people's security)
- 5) 형벌의 본질인 교육관에 배치됨 - 교정 교화 문제(재사회화 프로그램)
 - : 구치소, 교도소 시스템 변화를 주어야 한다.
 - * 재범 억제시스템 구축/ 재능교육 강화- 대학설립(고급기술교육, 언어교육 등)/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사회성 개발 및 기여- (봉쇄)수도원, 가족공동체 포함 / 재소자복지

"증오심이 그를 송두리째 집어삼켰지만, 삶은 그 증오심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미치지 않기 위해 택한 역사 공부”(필리프 모리스)

6) 정치적 반대자 탄압 수단

- 조봉암 사건(1959년 7월31일 사형집행), 인혁당 사건, 김성만 사건, 김대중 사건
-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340명 사형집행(살인죄 320명) - 박선영 교수(2004.4 국가인권위원회주최 ‘사형폐도개선을 위한 청문회’ 발제 중)

7) 범죄 원인이 사회 환경의 복합성

-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책임
- 범죄학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 살인과 자살

8) 사형수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가혹성, 정치·사회·종교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형평성 문제 & 피해자 구제(국가 배상책 등)

맺는 말

사형폐지 운동은 인간의 보편적이며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 쟁취 운동임을 알려내고, 사형제도는 단지 (범죄적?)살인에 대한 또 다른 (국가적)살인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공론화 작업)

사형수의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 또한 시인케 한다.(시민사회의 책임)

수감자(사형수 포함)가 교도·교화행정 제도에 의해 건강한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 시스템에 대한 일대 혁신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작업을 한다.(재사회화)

유럽 의회처럼 국제법의 강제에 의해 사형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종교단체와 연대하여 노력한다.(국제연대) ↗

4. 최근 현황에서 보는 사형폐지

- 1) 1948년, 세계인권선언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분 보장의 권리를 가진다.”
- 2) 1989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B규약) 제6조 1항 – 생명권에 기초한 사형폐지 강조
- 3) 19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 스톡홀름 선언 “사형제도를 절대적으로 또한 무조건 반대한다.”
- 4) 1989년 5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창설
- 5) 1993년 12월 21일 KNCC 인권위원회 사형폐지위원회 조직
- 6) 2001년 4월 27일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창립
- 7) 2003년 7월, 유럽인권협약 – 사형완전 폐지(戰時 포함)
*** UN 인권위원회 B규약 국회비준(?) 운동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2선택 의정서 가입검토

고 은 태 앤네스티 한국지부 위원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한 국제적 흐름

사형제도가 이미 지나간 20세기에 거스를 수 없는 인류 공통의 진전이 되었음은 사형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 사형제도에 관련한 국가들의 자료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를 포함하여 사형제도를 없애는 쪽에 서기로 한 국가들의 숫자이다. 국제앰네스티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80개국, 전시 혹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범죄 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15개국이며, 사형의 실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가 23개국으로서 모두 118개국이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78개국이다. 이를 통해 이미 사형제도는 국제적으로 대세가 결판이 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사형제도의 폐지 쪽에선 국가들의 이름과 사형제도를 고집하는 국가들의 이름이다. 과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는 어느 쪽에 서있는 국가들의 모습과

가까운가. 미국, 일본, 중국이 우리가 되고 싶은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에 가까운가 아니면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이 그러한가. 범죄와 사회안전으로만 범위를 좁혀보아도 어느 쪽의 국가들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가.

사형제도에 관한 통계로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즉 극적인 사형제도의 폐지추세이다. 1977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6개에 불과했다. 오늘 그 숫자는 80개국에 이르며, 이러한 사형폐지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4년 상반기에만도 사모아와 부탄이 사형을 폐지했다. 1990년 이래로 35개국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형을 다시 도입한 나라에 대한 통계이다. 1985년 이래로 50개국 이상이 사형을 폐지했지만, 같은 기간 사형을 다시 도입한 국가는 불과 4개국뿐이다. 이중 네팔은 사형을 다시 폐지했으며, 잠비아와 파푸아 뉴기니는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었다. 오직 필리핀만이 처형을 재개했으나, 이후 보류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사형을 폐지해도 사회가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존치론자들이 우려하는, 그러나 결코 증명하지 못한 사형제도 폐지의 부작용들이 사실이라면, 그간 사형을 폐지해온 수많은 국가들 중에 사형을 다시 도입한 국가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할 것이다.

사형폐지와 관련한 국제적 틀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련한 국제적 흐름은 단지 통계적 자료로만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인류역사에서 사형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한 국제적 틀이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2의정서, ‘미주인권협약’의 의정서, ‘유럽인권협약’의 6번 의정서, 13번 의정서들이 그들이다. 이러한 국제적 조약 외에도 1997년 이래 UN 인권위원회는 아직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통과시켜왔다. 마지막 결의안은 2004년 4월에 채택되었으며 76개 UN 회원국이 공동제안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숫자이다. 비록 이런 국제적 협약과 결의안

사형제도 폐지국가 : 118개국		사형제도 존치국가 : 78개국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실질적인 사형폐지국	
ANDORRA, ANGOL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ELGIUM, BHUTAN, BOSNIA-HERZEGOVINA, BULGARIA, CAMBODIA, CANADA, CAPE VERDE, COLOMBIA, COSTA RICA, COTE D'IVOIRE,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JIBOUTI, DOMINICAN REPUBLIC, EAST TIMOR, ECUADOR,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UINEA-BISSAU, HAITI, HONDURAS,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KIRIBATI,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CEDONIA (former Yugoslav Republic),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MICRONESIA (Federated States), MOLDOVA, MONACO, MOZAMBIQUE,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UE, NORWAY, PALAU, PANAMA, PARAGUAY, POLAND, PORTUGAL, ROMANIA, SAMOA, SAN MARINO, SAO TOME AND PRINCIPE, SERBIA AND MONTENEGRO, SEYCHELLES, SLOVAK REPUBLIC,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MENISTAN, TUVALU, UKRAINE, UNITED KINGDOM, URUGUAY, VANUATU, VATICAN CITY STATE, VENEZUELA	ALBANIA, ARGENTINA, ARMENIA, BOLIVIA, BRAZIL, CHILE, COOK ISLANDS, EL SALVADOR, FIJI, GREECE, ISRAEL, LATVIA, MEXICO, PERU, TURKEY	ALGERIA, BENIN, BRUNEI DARUSSALAM, BURKINA FASO, CENTRAL AFRICAN REPUBLIC, CONGO (Republic), GAMBIA, GRENADA, KENYA, MADAGASCAR, MALDIVES, MALI, MAURITANIA, NAURU, NIGER, PAPUA NEW GUINEA, RUSSIAN FEDERATION, SENEGAL, SRI LANKA, SURINAME, TOGO, TONGA, TUNISIA	AFGHANISTAN,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IZE, BOTSWANA, BURUNDI, CAMEROON, CHAD, CHINA, COMOROS, CONGO (Democratic Republic), CUBA, DOMINICA, EGYPT,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HANA, GUATEMALA, GUINEA, GUYANA, INDIA, INDONESIA, IRAN, IRAQ, JAMAICA, JAPAN, JORDAN, KAZAKSTAN, KOREA (North), KOREA (South), KUWAIT, KYRGYZSTAN, LAOS, LEBANON, LESOTHO, LIBERIA, LIBYA, MALAWI, MALAYSIA, MONGOLIA, MOROCCO, MYANMAR, NIGERIA, OMAN, PAKISTAN, PALESTINIAN AUTHORITY, PHILIPPINES, QATAR, RWANDA, SAINT CHRISTOPHER &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 GRENADINES, SAUDI ARABIA, SIERRA LEONE, SINGAPORE, SOMALIA, SUDAN, SWAZILAND, SYRIA, TAIWAN,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IET NAM, YEMEN, ZAMBIA, ZIMBABWE
80개국	15개국	23개국	78개국

*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란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남아있으나, 지난 10년간 전혀 사형집행이 없었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정책, 혹은 확립된 관습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국가이다.

△ 국제앰네스티 자료, 2004년 6월 9일 현재

들이 강제력을 가지고 개별국가의 법체계를 구속하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최소한 사형제도의 부당함과 폐지의 당위성이 이미 인류 전체가 동의하는 합의사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사형의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전세계를 범위로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사형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비준 혹은 가입 시에 그 효력에 대해 유보조처를 했을 경우 전시의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어떤 당사국이든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케이프 베르데, 컬럼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그, 마케도니아, 몰타,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4개국)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경우: 안도라, 칠레, 기니비사우,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폴란드, 상투메 프린시페, 터키 (8개국)

□ 제2선택의정서 전문

채택일 1989. 12. 15 / 발효일 1991. 7. 11 / 당사국 수 54 / 서명만 한 국가 8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사형의 폐지가 인간의 존엄의 향상과 인권의 전진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으며,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를 상기

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는 폐지가 바람직스러움을 강력히 시사하는 문언으로 사형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의 향유에 있어서의 전진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이에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 바람직스러우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의 관할 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 당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전쟁 중 범행된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 시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를 비준 또는 가입 시에 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의정서에 대한 어떤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비준 또는 가입 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시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관련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자국 영역에 적용되는 전쟁상태의 개시 또는 종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규약 제40조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규약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 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5조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제1선택의정서의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 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6조 1.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규약의 추가규정으로 적용된다.

2. 이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유보의 가능성을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의정서 제1조 1항에 보장된 권리는 규약 제4조 규정에 의한 어떠한 위반조치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7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위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시행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2. 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발효한다.

제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1항이 규정하는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a) 이 의정서 제2조에 의한 유보, 통보 및 통고

(b) 이 의정서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입장표명

(c) 이 의정서 제7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d) 이 의정서 제8조에 의한 의정서의 발효일

제11조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동등한 정본으로 하는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규약 제48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사형의 존폐론에 관한 고찰

사형의 존치론과 폐지론

1764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에서 잔인한 형벌인 사형의 폐지를 주장한 이래 지금까지 세계의 형법학계는 사형의 존폐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전개해왔다. 20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 이 논쟁은 학문적 입장에서는 대체로 폐지론의 승리로 귀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치론의 목소리는 아직도 높다.

존치론자에 의하면 첫째, 사형은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것이고, 둘째, 사형은 이러한 흉악범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응보라는 것이며, 셋째, 사형은 그것의 존속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며 정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사형은 존치론자들이 고집하는 것처럼 범죄예방이나 억제의 효과가 없다. 즉 사형에 위하력이 없음은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이처럼 사형은 존치한다고 해서 사형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폐지한다고 해서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사형을 응보로만 보는 존치론은 형벌의 본질을 교육으로 보는 현대의 형벌관에도 배치되는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둘째, 사형은 인도적인 이유로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우주의 무게보다 무겁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부여할 수 없다면 국가 구성원의 생명을 앗을 권리도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형이 법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살인 행위라는 점은 사형집행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요컨대 사형은 폐지한다면 회피할 수 있는 비극이다.

셋째, 사형은 오편의 가능성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은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것도 인간인 것이므로 인간의 한계로서 오편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러한 오편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어 버린 경우 진범이 체포되더라도 이를 회복하거나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넷째, 사형은 악용되었고 또한 악용의 가능성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가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다.

사형의 존폐에 관한 세계 각국의 경향

2001년 11월 현재 모든 범죄에 관하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75개국, 전시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3개국, 사형이 존치 중이나 사실상 처형이 없는 국가는 20개국 등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는 108개국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추세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화 선진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엠네스티의 2001년 5월 2일자 보고에 의하면 2000년도 1년 동안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5개국에서 3058명이고, 이중 28개국에서 적어도 1457명이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의 실태

해방 후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검토없이 이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형을 인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16개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 형법에서 32개 죄, 군형법에서 반란죄 등 33개 죄가 있으며, 개폐가 논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

4개 죄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형이 인정되는 범죄도 많지만 그 선고율도 아주 높은 편이다. 군사법원의 실태는 외부에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며, 일반 법원에서는 매년 평균 약 20건 정도의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형폐지의 전략

사형의 폐지에는 대체로 일거에 완전히 폐지하는 방법과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폐지운동도 이에 따라 역시 두 가지 노선이 있을 수 있다. 전자를 완전 폐지론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단계적 폐지론이라고 할 수 있다.

1) 완전 폐지론과 그 전략

완전 폐지론은 사형을 일시에 전부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그 전략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가. 사형폐지법안의 제출 통과

이것은 수많은 형별 법규에 존재하는 사형을 일일이 해당 법규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과 번잡함, 그리고 시간의 낭비를 고려하여 특별법으로 모든 형별 법규상의 사형을 폐지하는 것은 내용으로 하는 사형 폐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여 처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나. 위헌의 제소, 또는 헌법 소원의 제기

이것은 형별 법규에 규정된 사형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에 대한 침해임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 또는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1972년 미국의 대법원이 사형을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로 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함으로써 그 이후 약 10년간 미국 전역에서 사형이 폐지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이 방법을 써보자는 것이다. 사형폐지운동협의회도 1989년 2월과 1995년 1월에 사형이 위험임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19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사형폐지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사회적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 여론의 동향과 사회변동을 보아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다.

2) 단계적 폐지론과 전략

이 주장과 방법은 사형을 일거에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단계적으로 사형을 축소, 억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완전 폐지에 이르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단계적 폐지론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가. 우선 사형 범죄의 종류와 수를 줄여야 한다.

법무부의 형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도 "사형범죄는 가능한 줄인다"고 결의하였으므로, 형법 개정 작업과정에서 형법제정 이후 사형 범죄 중 한번도 적용된 일이 없는 범죄부터 사형을 법정형에서 삭제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특별 형벌법 규도 마찬가지로 조사, 삭제하여야 한다.

위 형법 개정 심의위원회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결과적 가중법인 폭발물 폭발치상 등 10개 범죄에 규정된 사형 조항을 폐지하였다.

나. 사형의 구형과 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

사형은 검사의 구형과 법관의 선고에 의하여 형벌로써 응징되고 구체화가 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판검사로 하여금 사형의 구형과 선고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한 검사로 하여금 사형의 집행자가 되게 하고, 이를 선고한 판사로 하여금 그 입회인이 되게 제도화하는 것도 사형에 대한 심리적 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형의 선고는 법관의 만장일치제로 하고, 상급심(고등법원, 대법원)에서 1심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선고 결과를 파기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일은 금지해야 할 것이다.

다. 사형수에 재심의 길을 폭넓게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심제도는 원래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재심 억제 또는 재심 불허의 속성과 구조를 갖고 있고 운영의 면도 그러한데, 사형이 확정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재심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무죄를 호소한 자에게는 필요적으로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사형의 집행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사형은 오판 또는 악용의 가능성성이 많은 제도이고, 특히 사형수가 억울함을 주장할 때에는 더욱 그 집행이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형을 상당기간(예를 들어 확정 후 5년 정도) 유예하여 정세의 변화, 진범의 체포, 재심에 의한 변복 등 사정 변경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재심이 신청되어 개시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

마. 더 나아가서 재심의 신청이나 개시가 없더라도 사형확정 후 상당기간 집행을 유예 또는 연기해 줌으로서 개과천선의 여부를 살펴 그 이후 집행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마지막으로 사형을 대신할 만한 대체형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것은 완전 폐지론에서도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 정치인, 정책실무자들이 주저함이 엇이 사형을 폐지하는데 동의할 수 있도록 대체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것의 하나로 특사, 감형 불허 종신구금형(중무기형)이 고려될 수 있고, 영미법계 국가처럼 예컨대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경합법 가중한도를 철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사형폐지의 전망

우리나라는 사형이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사형의 선고율도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1989년의 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77%가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2000년의 형사

정책연구원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3%가 사형제도의 존속을 바랬고, 43.3%가 폐지에 찬성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년 조사에는 57.7%의 국민이 법질서유지를 위해 존속되어야 하지만 선고나 집행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폐지의견이 34.1%로 나타났다.

사형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고, 부당하며, 또 하나의 악”임에 틀림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인류를 마땅히 폐지의 방향으로 전진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방향아래 사형폐지의 방법론을 검토해보면, 결국 사형폐지란 흉악범, 인신 매매범 등에 분노하여 극형을 주장하는 국민들, 인기없는 사형폐지법안에 선뜻 찬성하지 않으려는 정치인들, 사형의 필요를 신앙처럼 믿고 역설하는 정책실무자들을 설득하는 곤질긴 작업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형폐지에 호의적이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이를 일거에 폐지하겠다는 완전 폐지론보다는 단계적 폐지론이 더 현실적인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영국처럼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 사건이라는 특정 계기에 의하여 완전 폐지로 돌아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형폐지 운동 세력은 단계적 폐지 전략을 착실하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면서 기회를 엿보는 자세도 필요하겠다고 하겠다. 결국 사형폐지 문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인간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한국의 사형제도 현황

현행법상의 사형범죄

(1) 형법

현행 형법은 5개의 죄에 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법조문은 16개 조문에 이른다. 그리고 소년법에서는 범죄 행위시에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제59조)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 제93조 소정의 여적죄(與敵罪) 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형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여적죄에 있어서도 작량 감경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형을 과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형법은 국사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사실 중의 치사사건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내란죄 (87, 8, 8)
- ② 외환죄 (92 내지 96, 98)
- ③ 폭발물 사용죄 (119)
- ④ 현주건조물방화 등에의 치사상죄 (164)
- ⑤ 살인죄 (250, 253, 301, 304)
- ⑥ 강도살인 치사죄 (338)
- ⑦ 해상강도 살인, 치사, 강간죄 (340)

(2) 특별 형법

형법 시행 뒤에 드러난 여러 가지 형법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20개의 특별 형법에서 69개 조항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1. 군형법 (1994. 1.5 법률 4703호)

- ① 반란의 죄 (5조)
- ② 이적의 죄 (11조-13조)
- ③ 지휘권 남용의 죄 (18내지 20조)
- ④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22조 내지 24조)
- ⑤ 수소이탈의 죄 (27조, 28조)
- ⑥ 군무이탈의 죄 (30조, 33조)
- ⑦ 군무 태만의 죄 (37조, 38조, 40조 내지 42조)
- ⑧ 항명의 죄 (44조, 45조)
- ⑨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50조 내지 52조, 52조의 3, 52조의 4, 56조 내지 58조, 58조의 4, 59조, 60조)
- ⑩ 약탈의 죄 (84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①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5조의 2)
- ②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5조의 3)
- ③ 상습 강절도죄의 가중처벌 (5조의 4)
- ④ 강도 상해 등의 재범자의 가중처벌 (5조의 5)
- ⑤ 특수강도 강간 등의 가중처벌 (5조의 6)
- ⑥ 단체 등의 조직 (5조의 8)
- ⑦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5조의 9)
- ⑧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10조)
- ⑨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11조)

3. 국가보안법

- ① 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 (3조)

- ② 목적수행 (4조)
- ③ 잠입, 탈출 (6조)
- ④ 특수가중 (13조)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① 특수강도 강간 등 (5조)
 - ② 강간 등 살인치사(10조)
- 5. 보건범죄단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 ① 부정식품제조 (2조)
 - ② 부정의약품 제조 (3조)
 - ③ 재범자의 특수가중 (3조의 2)
- 6. 마약류 불법 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 ① 불법 수입 등 (6조)
-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① 영리 부정 또는 상습 행위자의 범죄 (58조)
- 8.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 ① 소년에 대한 형 (4조)
- 9. 대통령 경호실법
 - ① 9조 위반
- 10. 상훈법
 - ① 치탈 (8조)
- 11. 한국조폐공사법
 - ① 은행권 등의 강취 (19조)
- 12. 원자력법
 - ① 원자로 파괴 (114조)
- 13. 전투경찰대 설치법
 - ① 작전근무기피 목적상해 (19조)
- 14. 경찰과 직무집행법
 - ① 경찰 장구의 사용 (10조의 2)
 - ② 무기 등의 사용 (10조의 4)

- 15.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규제에 관한 법률
 - ① 화학무기 사용 사상 등 (25조)
- 16. 항공기 운항 안전법
 - ① 납치, 치사상 (9조)
- 17. 항공법
 - ① 항공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157조)
 - ② 동 치사상 죄 (158조)
- 18. 문화재 보호법
 - ① 지정문화재 등 관리자 등 치사상 죄 (83조)
- 19.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① 장기 이식 등 치사죄 (39조)
 - ② 뇌사신고 허위 작성 치사죄 (41조)
-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① 단체 등 구성 활동 (4조)

사형의 집행

- (1) 사형집행의 방법 및 절차
 -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의 집행은 교수(絞首 - 목을 졸라매는 것)의 방법으로 교도서 안의 사형장에서 하게 되어 있다 (형법 41조, 66조, 형소법 463조, 469조, 행형법 57조). 다만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형소 465조1항),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형소 제466조), 검사와 검찰청 서기관과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의 입회 아래 (형소 467조1항), 교도서 내의 사형장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법 제66조). 그러나 군형법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법회의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서 집행한다 (군형법 3조).
 -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며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부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형소 469조).

- 범죄행위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과하지 못한다 (소년법 59조). 그리고 정식 집행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 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형형법 57조).
- 사형 집행이 집행된 뒤에 사제는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하고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교도소에서 매장 또는 화장한다(형형법 58조, 59조).

(2) 사형선고와 집행 현황

(ㄱ) 먼저 사법연감의 통계를 중심으로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의 제1심 공판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죄명과 인원수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제1심 형사 공판사건 죄명별 사형 인원수

총수	살인	강도살인 치사	강도 강간	정조에 관한죄	방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향정신성 의약품관 리법	내란 의죄	외환 의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기타	
1968	26	8	4	1					2	10		
1969	25	5	5							15(5)		
1970	37	16	13	1						7		
1971	45	12	7						2	24(13)		
1972	39	10	15							14(1)		
1973	24	10	10							4(2)		
1974	27	10	8							8(1)		
1975	33	14	10			1		1		8		
1976	32	13	10			4				5		
1977	14	6	5							3(2)		
1978	17	8	8	1						5(3)		
1979	18	12	3							1		
1980	32	16	10			1				6		
1981	33	23	4	1		1		3	4			
1982	35	12	12	2		4				1		
1983	19	6	4			5				1		
1984	18	14	1	1	1							
1985	25	16	7			1						
1986	23	16	7									
1987	18	7	9	1		1				1		
1988	15	10	4			1				1		
1989	17	10	5			1						
1990	36	24	10		1							
1991	35	22	7			6						
1992	26	17	3			4				2		
1993	21	13	6			2						
1994	35	20	14			1						
1995	19	17	1			1						
1996	23	7	15							1		
1997	10	7	2							1		
1998	14	6	6	2								
1999	20	12	5			3						
2000	20	11	8		1							
총계	831	410 (49.3)	238 (28.6)	8 (1.0)	3 (0.36)	2 (0.2)	36 (0.1)	1 (0.1)	1 (0.1)	7 (0.9)	121 (14.6)	4 (0.4)

<표 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사형이 선고된 범죄의 유형을 보면 살인죄가 가장 많고 강도 살인치사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6.29 민주화가 이룩된 1989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전무한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둘째로, 사형이 선고된 인원수를 연도별로 보면 1970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와 1980년과 1981년에 비교적 높고 그 이후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가 1990년, 1991년 및 1994년에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중벌 위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개정된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ㄴ) 다음 상고심의 사형 원심 판결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을 1970~1990사이 20년간의 통계 <표 2>에 의하여 보면 사형원심 판결에 대한 변경은 4.3%에 불과해 원심의 사형 판결에 대한 상고심의 변경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상고심의 사형 원심판결에 대한 태도

연도구분	원심 판결 인원	원심 판결				사형	무기징역	환송	기타변경
		불변경	누계	변경	누계				
1970	19	19	19		0				
1971	24	24	43		0				
1972	27	27	70		0				
1973	22	22	92		0				
1974	13	3	105		0				
1975	12	2	117		0				
1976	15	5	132		0				
1977	12	9	141	3	3	3			
1978	39	37	178	2	5	2			
1979	37	37	215		5				
1980	25	20	235	5	10		5		
1981	18	18	253		10				
1982	23	22	275	1	11	1			
1983	21	21	296		11				
1984	11	10	306	1	12	1			
1985	8	6	312	2	14	2			
1986	6	6	318		14				
1987	6	6	324		14				
1988	8	8	332		14				
1989	2	1	333	1	15	1			
1990	2	2	335						
계	350	335		15	1	6	3	5	

자료 : <사법연감>에 의하여 작성함.

(c) 다음 <표 3>은 사형집행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 이 역시 연도별로 보면 1972년, 1974년, 1976년, 1977년, 1982년 등이 비교적 높고 그 이후 현저히 줄어 들어오다가 1990년에 이르러 다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례적으로 집행하였고 1991년에는 다시 집행이 이어졌다. 어는 소위 가정 파괴범 등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범죄별로 보면 대부분 강도살인이나 살인에 대하여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1997. 12. 30에 23명 무더기 사형집행을 한 것은 김영삼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후임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직후에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가 사회 기강의 확립 차원의 집행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표 3> 연도별 사형집행 인원수

연도구분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인	유괴살해	간첩 등	계	일본
1970	1	11			2	14	26
1971	2	3	1		5	11	17
1972	6	8			20	34	7
1973	1	2			4	7	3
1974	17	20	2		19	58	4
1975							17
1976	8	16	1	1	1	27	12
1977	5	15	1	2	5	28	4
1978							3
1979	3	5		2		10	1
1980	5	4				9	1
1981							1
1982	8	10	2	1	2	23	1
1983	6			1	2	9	1
1984							1
1985	1	3		3	4	11	3
1986	4	5	1		3	13	2
1987	1	2	1	1		5	2
1988							2
1989	3	3		1		7	1
1990	6	7	1			14	
1991	5	1	1	2		9	
1992						9	
1993							7
1994						15	2
1995						19	6
1996							6
1997						23	6
1998							4
1999							5
계	82	113	11	14	67	353	142

자료 : 헌법재판소 9헌바 13호, 형법 제 3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에서 원용함. 1992년 이후는 한인섭 교수의 논문 중에서 원용.

불과하고 다음 정권이 사형폐지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행하여진 대량 학살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배인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형 집행건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c) 1948년 정부수립 연도부터 가장 최근에 김영삼 정부에 의하여 1997년에 무더기 사형집행이 있기까지의 사형 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다.

-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사형 집행건수는 총 96명으로 연 평균 9.6명이다. 10년 단위로 보면 사형 집행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1998년 이후 오늘까지 사형집행은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의 전망이 보이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표명은 2001년 11월 현재 아직 없다.

■ 참고자료 3_사형제도관련 기사 모음(2000. 10.~2004. 7.)

□ 사형제 폐지될까... 법사위 통과여부, 시기 주목 [매일경제 2001-10-30 16:43]

[김선걸 기자] 30일 민주당 정대철, 한나라당 이부영, 자민련 오장섭 의원 등을 포함한 국회내 과반수에 해당하는 여야 의원 154 명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 여부와 시행시기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91명, 한나라당 60명,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 3명 등이 각각 서명했다.

형법 등 각종 법에서 규정한 형벌 중 사형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대신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범죄의 종류, 죄질 등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복역 개시 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고 법 시행 전에 사형판결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는 154명이 서명했지만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많아 앞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나라당은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형폐지여부를 놓고 이에 반대하는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찬성하는 권오을 기획위원장간에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정책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당론을 내거나 당론 없이 의원 개인 의사에 맡길지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당론을 포기하고 의원 개인의사에 맡기더라도 법사위 통과 때는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총 12명의 법사위원 중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5명이 찬성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 등 3인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의원들의 의사가 과반수이상 통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사형제는 "국가권력 남용 法으로 생명권 침해 못해" 국책기관 형사정책研

[국민일보 2001-11-06 11:51]

여야 의원 155명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사형제

폐지를 적극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계간 학술전문지 〈형사정책연구〉 가을호에 법학박사인 박기석 교수(대구대 경찰행정학)의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사형제 폐지의 근거를 다각도로 분석, 제시한 박교수는 우선 사형제가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법의 한계를 넘어선 제도임을 강조했다.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법 이전의 것으로 헌법 제정권력도 제약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헌법은 제37조 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사유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며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본질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사형제는 범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범죄억지라는 순수한 기능 외에 권력자가 국민 일반을 억압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내포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는 범죄인을 사회와 완전 격리시킬 수 있는 장치와 힘을 갖고 있고 순화된 제재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생명을 뺏는 선택을 하는 데에는 극적인 요소를 통해 국민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설명이다.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박교수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형벌의 업종성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범죄인으로 하여금 범죄포기가 아닌 적발 회피책을 철저히 강구, 범죄를 보다 조직화·상습화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 범죄예방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형선고를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인격파탄, 자포자기, 경정상태 등으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늠할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테러범이나 정치범 같은 경우 소영웅심리나 광신에 사로잡혀 사형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다 심지어 자신의 불법행위가 사형에 의해 완성된다고 여기는 경향까지 있음을 상기시켰다.

박교수는 "사형제는 이론적으로 실정법에 수용될 수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유용성보다는 폐해가 커 현대국가에서 취해서는 안될 제도"라며 "아무리 중한 범죄자라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에 처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김호경기자 hkkim@kmib.co.kr

□ 美, 사형제도 또 위헌 판결 [문화일보 2002-09-25 12:55]

미국의 한 연방지법 판사가 다시 연방 정부의 사형제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윌리엄 세슨즈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24일 사형제가 사형을 선고 받는 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제드 라코프 뉴욕 연방지법 판사가 "지난 94년 제정된 연방 사형법은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을 극형에 처하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을 선언했었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사형위헌 판결에 불복해 항소중이다.

이 같은 사형위현판결은 개별 주(州)의 사형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록 일부 주에선 여러 해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38개 주가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일리노이, 메릴랜드주의 경우 주지사들이 사형집행 유예 선언을 내려놓고 있다. 이 때문에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정부청사 폭파범 티모시 맥베이와 마약 살인범 후안 가르자는 연방 사형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었다. 이날 사형 위현판결은 2000년 한 여인을 납치,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올해 22세의 도널드 펠 사건과 관련해 내려졌다.

몬트필리어(버몬트주)=AP연합

□ 11월 30일은 사형제 반대의 날 [국민일보 2002-11-24 21:46]

사형에 반대하는 한 국제연대 조직이 오는 30일을 <세계사형반대의 날>로 선언했다. [사형반대 국제연대]란 이 조직에 가입한 종교적 세속적 권리 수호단체들을 대표하는 로마 소재 국제 가톨릭 평신도단체 [산테지디오]의 마리오 마라지티 대변인은 22일 기자 회견을 통해 이 날짜가 지난 1797년 토스카나에서 세계 최초로 사형이 폐지된 날이란 상징적 가치 때문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마라지티 대변인은 또 이 날이 앞으로 “사형은 고문이나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한 도구였음”을 세계에 회상시키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테지디오에는 세계 60개국 가톨릭 평신도 약 4만 명이 가입해 있으며, 사형반대 국제연대에 가입한 주요 인권단체 중에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와 국제인권연맹(FIDH)이 포함되어 있다.

한 나라가 사형을 폐지할 때마다 로마 시내 콜로세움(원형 경기장)을 조명으로 환하게 밝히는 로마시 당국의 선례에 자극받아, 이 국제연대의 조직위원들은 세계 주요 도시에 대해 오는 30일에 한 주요 기념물을 빛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로마시는 또한 한 이슬람 법정에 의해 지난 2000년에 돌로 쳐 죽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피야 후세이니란 한 나이지리아 여성의 경우에서처럼 사형이 번복될 때도 콜로세움을 밝히고 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한 장엄한 성당을 빛으로 목욕시키기로 동의했으며 칠레의 산티아고도 도심의 한 공원을, 그리고 뉴욕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시내의 한 공공건물 내부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또 벨기에의 수개 도시와 파리, 코펜하겐, 런던, 스톡홀름, 그리고 암스테르담도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형반대 운동은 지난 30년간 활발하게 전개되어왔으며, 그 결과 사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금하고 있는 나라들은 1970년의 21개국에서 오늘날에는 111개국으로 급증했다. 이 중 사형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75개국이다.

앰네스티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려진 모든 사형집행의 90%가 미국, 중국,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뤄졌다.

로마=AFP연합

□ AI, 한국 사형제폐지 촉구 [경향신문 2002-12-01 19:33]

국제 앰네스티(AI)의 사형폐지 운동 일환으로 구성된 [앰네스티 국회모임](위원장 柳在乾)은 지난달 30일 [세계 사형반대의 날]을 맞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현재 대기 중인 56명의 사형수들을 무기형으로 감형해줄 것을 탄원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AI 한국지부가 1일 밝혔다. AI는 현역 의원 56명으로 구성된 앰네스티 국회모임의 이번 서한 전달에 이어 법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를 이달 초순 김대통령에게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는 이와 함께 별도로 낸 성명을 통해 김대통령과 대선후보들이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1998년 2월 이후 취해진 사형집행유예 조치를 공식화할 것을 권고했다.

성명은 특히 “한국은 96년 이후 2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다가 97년 12월30일 남자 18명과 여자 5명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면서 이달 대선 이후 신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까지 사이에 비슷한 형태의 대량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에서는 김대통령 취임 이후 5년 여간 사형이 한건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56명의 사형수가 대기 중인 가운데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155명의 발의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 “한국 사형제 폐지 시기상조 아니다” [오마이뉴스 2003-02-06 09:39]

사형제도 문제의 전문가인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 피터 호지킨슨(59)씨가 지난 3일 내한했다. 오는 8일까지 강연회 등의 일정을 진행 할 호지킨슨씨는 5일 오전 10시 영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호지킨슨씨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사형제도 폐지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의 예방책, 대체 형벌, 사형제도 찬성론자 설득방법 등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이번 방한을 통해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형제도 폐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그의 견해와 이에 대한 질문이 오고갔다.

먼저 그는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들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극刑이 존재함으로써 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벌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러한 주장들은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례에는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사형제도로 인한 폐단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금까지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범죄의 희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나는 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피해자들의 보호나 철저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유럽의 비정부 단체로 피해자연합 등이 있음을 예로 들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형제도 폐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들이 많다”라는 질문에 대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설득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 경우는 다른 나라, 즉 사형제도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여겨졌던 나라들이 폐지한 경우를 예로 들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시하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한국의 경우는 현재 사형 집행이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고, 인권단체 등의 주장과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실제적인 사형제도 폐지가 이뤄지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기간을 걸쳐 국민들을 설득하고, 제도의 잘못된 방식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형벌의 수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측면과 함께 인도적인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한국방한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한국인들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 유럽 45개국 사형제 완전폐지 – 국내 사형제 폐지 논의에 영향 [프레시안 2003-07-03 11:21]

[김한규 기자] 국내에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전시 상황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의정서가 발효되는 단계에 와있어 크게 대조되고 있다.

AP, AFP 등 해외 통신들에 따르면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7월 1일부터 회원국 45개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날 발효된 [유럽인권회의 제 13호 의정서]는 지난 1982년 채택된 [제 6호 의정서]보다도 진일보한 것으로 전범에 대한 사형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전쟁 중이나 전쟁위협이 임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발터 슈비머 유럽회의 사무총장은 “유럽회의가 세계 최초로 평상시 사형집행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 전시 사형집행까지 금지하게 됐다”고 이번 의정서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또 “사형제 폐지는 문명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절대 가치라는 신념의 징표”이며 “사형제의 전세계적 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역할 수 없는 추세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유럽회의 의원총회 페터 쉬더 의장도 “이로써 45개 회원국들은 사실상 사형 청정구역이 됐다”면서 인권에 대한 폭력 가운데 최악인 사형제도는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연합이나 유럽회의는 사형제도 철폐가 가입조건의 하나로 돼 있다.

국제 엠네스티에 의하면 사형제는 지난 4월 현재 전 세계 83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1백12개국은 폐지했다.

이번 사형제 전면폐지 의정서는 지난해 5월 회의에서 러시아,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외의 41개 회원국이 서명해 채택되었으며 이 가운데 발효에 필요한 조건인 10개국보다 많은 15개 회원국이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한편 유럽회의는 유럽의 점진적 통합과 민주주의 및 인권신장을 위해서 설립된 범유럽 정부간 협력기구다. 유럽회의는 EU의 후원 하에 많은 협약들을 채택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9년의 [고문과 비인간적 처벌 등의 금지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현재 가입국은 45개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사형제 유지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사형제도 점진적 폐지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우리 정부는 인권 후진국들과 함께 유엔 인권위의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국제 인권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 인권위 결의안 찬성과 함께 인권위 권고사항인 ‘임기 내 사형집행 유보’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엔 인권위는 지난 97년부터 매년 유엔 회원국들이 사형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지난해 제58차 인권위 표결에서 중국, 일본 등 19개 국가와 함께 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올해 4월25일에도 유엔 인권위원회는 제59차 회의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4, 반대 20, 기권 8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사형폐지에 다시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유럽회의 의정서 발효로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인 사형폐지운동에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피터 호지킨슨 세계사형폐지연맹 영국 대표는 “국민의 완전한 지지를 받아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없다”면서 사형제 폐지는 여론을 극복해서 시행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가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에도 지금까지 사형제의 강력범죄 억제효과를 증명한 연구 결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럽연합(EU) 이사회의 사형전문자문위원회 활동으로 활동하는 등 사형제 전문가인 그는 “인간은 실수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판사도 오판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까지 사형제가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돼온 사례가 많다”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형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함께 피해자 보상에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즉각적인 폐지보다 재원 마련과 인식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폐지로 가야 부작용이 없다는 현실적 단계적 폐지론을 폈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천6백34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이중 197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이 내려진지 20시간 만에 8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집행이 이뤄진 뒤 지금까지 1건의 집행도 없었지만, 현재 미집행 사형수 52명가 있다.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위헌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사형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며 강금실 법무장관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종교계, 사형제 폐지 전방위 총력전> [연합뉴스 2003-07-06 07:35]

[서한기 기자] 최근 유럽 45개국에서 사형제를 전면폐지하는 의정서가 발효된 것을 계기로 종교계가 국내 사형제도 폐지활동에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 종교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범종교인권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2일 대부분의 유럽지역을 사형제가 없는 곳으로 만드는 유럽의회 의정서 발효로 전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을 국내 사형제 폐지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방위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등 7대 종단으로 이뤄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은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각 종단 원로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등 대정부 활동수위를 높여가는 한편 사형폐지법안 제정을 위한 여론조성 조성차원에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국제적 인사를 초청,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회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설득작업 등 입법촉구활동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범종교인연합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연이어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관용 국회의장을 방문,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을 하루속히 제정해 참여정부에서는 사형폐지가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8.15광복절에 사형수에 대한 무기감형과 사형집행 유보를 공식선언,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범종교인연합은 오는 8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 기도모임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기독교협의회 백도웅 총무는 “21세기 문명의 세기에 들어서도 아직까지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흉악범은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종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임을 인정하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시민 셋 중 한명 “사형제도 폐지” [한겨레 2004-03-23 18:14]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최근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맡겨 일반 시민 1064명,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260명, 국회의원 100명, 법관 113명, 검사 138명, 변호사 105명, 교정위원 100원, 의무관 55명, 언론인 250명 등 모두 2020명을 상대로 사형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 시민의 34.1%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국회의원의 60%, 법관의 53.1%, 교정위원의 80.6%가 사형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답한 반면, 검사, 교도관, 의무관들은 각각 16.7%, 11.3%, 11%만이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는 85.8%, 언론인은 54.3%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63.4%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생명권>을 꼽았으며,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56.5%에 이르렀다.

황준범 기자 jaybec@hani.co.kr

□ 유엔 인권위 사형제 폐지 결의안 [YTN 2004-04-21 23:16]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6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사형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럽 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 위원국의 투표 결과, 찬성 29, 반대 19, 기권 5으로 힘겹게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장기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당장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임신부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대 투표를 통해 각 나라는 스스로의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사형 제도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형제도’ 인권침해인가... 흉악범 예방책인가> [연합뉴스 2004-07-19 09:27]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 온 사형 제도에 대해 정치권이 이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엽기적인 연쇄살인범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죄명은 내란·간첩·살인죄 등 모두 19개 조항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6개 특별법 84개 조항을 합쳐 모두 103개 조항에서 사형을 최고형으로 두고 있다.

형법 93조 여적죄(與敵罪)는 사형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량 감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이외의 형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입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 사형제 폐지 논란 왜 치열한가 = 사형 제도에 관한 논쟁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문제로 효과 여부를 떠나 과연 사형 제도가 정당한가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형제도가 흉악한 강력 범죄의 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응분의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사형에 대해 '필요악'이라며 사실상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헌법재판소는 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현재로는 필요한 제도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는 "형벌로서의 사형이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뤄 지금 당장 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 돼야 하고 시대상황이 변하면 재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00년 10월 '영웅파' 두목 이모(34)씨에 대해 사형을 확정하면서 "우리나라 실정과 국민의 도덕감정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을 처벌로 규정했다고 해서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에 대해 다시 합헌으로 판단했다.

반면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일종의 '법에 의한 살인'인 사형 제도가 윤리적으로 타당한가를 문제 삼고 있다. 형벌 특성상 잘못된 법집행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사형 제도가 '악용'됐던 사례는 사형제도를 없애고 감형이 안 되는 종신형 등 장기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감정적 대응 자체... 진지한 논의 모색해야 =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려는 정치권의 입법 노력은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온 국민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사형제 폐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4.1%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 아직은 사형제도 유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는 국회의원 100명, 법관 113명, 검사 138명, 변호사 105명, 교정위원 100원, 의무관 55명, 언론인 250명,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260명과 국민 1천64명 등 모두 2천20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그러나 97년 12월 30일 문민정부가 사형집행 대기자 23명에 대해 대규모 집행을 한 뒤에는 국민의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6년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사형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시민·사회·종교 단체의 노력과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의식한 판단의 결과로 풀이된다.

민변 장주영 변호사는 "한번 잘못된 법집행은 되돌릴 수 없는 사형이 너무 많은 범죄 처벌 조항에 규정돼 있다"며 "단기형을 보완하고 가석방이 안되는 50년 형이라든가 종신형 등 장기형을 도입하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한다면 사형 폐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일선 판사는 "흉악 범죄자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삼가하는 게 법 정신"이라며 "사형 제도 존폐 논의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논점이 흐려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